#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- 검 토 보 고 -

#### □ 개정이유

-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공 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 온 바,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
- 2004. 7. 30부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·공포 되에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동 조 레를 개정코자 함.

#### □ 주요골자

-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.(안 제5조)
-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함. (안 제11조)
- 군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화 장실의 설치를 명 할 수 있게 함.(안 제 14조)
-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함. (안 제16조)
- 공중화장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 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8조)

## □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
-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(안) 행정자치부

#### 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에 의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시행 및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에 대한 설치·관리기준 및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요되 는 재정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,
-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중 위반사항에 있어
  - (1-나)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시 부과금액과 (2-가)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위반시와 (4)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부과금액이(1차 10만원, 2차 20만원, 3차 30만원)형평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191호

제출연월일: 2004. 11. 5 제 출 자:예산군수

#### 1. 개정이유

-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유지·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·공포되어 '04. 7. 30 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 적으로 유지·관리하고,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 도록 함(안 제4조).
- 나. 청소기준, 대·소변기 소독주기, 내·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·관리기준을 정함.
- 다.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 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기준을 정함. (안 제 14조 내지 제15조)

#### 3. 참고사항
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
- 공중화장실 설치및표준조례(안)시달(행정자치부)

예산군조례 제 호

#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중화장실등"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의 범위)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.
  - ②법 제3조제2호에서 "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·제7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
- 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·관리

- 제5조(설치기준)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2.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3.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,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4.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(페이퍼 타올)·그림·사진·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5.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6조(위탁관리 등)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·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제7조(관리인의 교육) ①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(이하 "관리인"이라 한다)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
- 제8조(편의용품의 비치·제공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1.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
  - 2. 세정제
  - 3. 방향제
  - 4. 탈취제 및 소독약품
- 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 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1일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.
  - 2. 대·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3.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·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, 도색 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관리대장의 비치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, 시설의 유지·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· 운영

- 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 은상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.

- 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편의위생용품의 지원)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 · 관리

- 제14조(이동화장실의 설치)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5조(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)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·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2.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.
  - 3.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4.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·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- 2. 청소,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악취의 발생과 파리,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.
- 4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하여야 한다.
-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####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

- 제16조(유료화장실의 신고)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전반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
  -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
  -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(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이내)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.
- 제17조(준수사항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.
- 2.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.
- 3.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.
- 4. 기타 화장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.

#### 제6장 과태료 부과

제1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.
- ③(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.

#### 【별표】

# 과태료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사항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.
- 나.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,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.
- 다.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1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.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(	차 60 80
가.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 40     나.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 20     2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 법 제21조 제1항 제2호	
나.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  2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 법 제21조 제1항 제2호	
2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 법 제21조 제1항 제2호	30
즈으 ભારોના	
চিত্র গাটাধালা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	
가.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	30
나. 제11조 제4항 설치·관리기준 위반 20 30 <sup>4</sup>	10
3.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제3호	
가.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(	60
나.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	30
4.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	30
5.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	20

# 【별지 제1호 서식】

# 공중화장실 관리카드

## 전 경 사 진

소 자	· 지							화경	y실!	명칭								
지 역	구 분					اد دا				-D -D	=i) \( \)	소 🤄	수					
설 치 및 관리주체	설치주체					설 치 년 도				관리		직극	급					
	관리주체						·			공무		성기						
관 리	(전화번호 :					:	)		월평균 이용인원									
			부 <i>7</i>		화장	실	1	대변기	] 수		소니	변기	수	대변	크기	유형	형 /	사용료
규	모	부 지 (m²)	화장 면 <sup>2</sup> (m²	)	남	여	장애인	성역	성인용		용동	동양식		양식	유료	. 무료		
편의시설	설 내역	세 면 시 설	난방 시설	냉병 시설	10 July 10 Jul	한풍기	화장기 (자 등 판매기	() () () () ()	비누	수 7 (에 o 타올	를 (방	취제 향제)		) 소도     부	드구힘 외부	기 타		
시설관리	리 내역	년월일	! 관리	사	항 (	금 액 (천원)	년월일	관	리시	항 (	금 액 천원)	년월	일	관리	사항	금 액 (천원)		

# 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유료화장실 □ 신고서 □ 변경신고서									처 리 기 간 3일			
- 신	상 호(명칭)											
청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									
인	주 소											
시	소 재 지	관리주체										
설 현	관 리 인		(전화번.	)	설치년도							
황	규 모	규 모 부지: m², 화장실 면적: m²										
시			대변기 수		소빈	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형	
,	시 설 내 역	남자용	여 자용	장애인용	성 인 용	유 아 용		동 양 식		서 양 식		
설												
내		세면기	에 어	에 어 타 올 (페이퍼타올)		화 장	지	비	누	방형	냥 제	
''	편 의 시 설	세인기	(페이고			유	무	유	무	유	무	
역	역											
	1회 사용료 원											
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 고합니다.												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 예 산 군 수 귀하												
그비셔르												
- <sup> </sup>										产료		
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없 음										음		
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												

# 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제	ই			유 료 화	장 실 신	고 필 증					
대	상 호(명칭)										
丑	성	명									
자	주	소									
관	<u></u> 리	인	(전화번호 : )								
시	시 설 내 역			대변기 수		소변	기 수	대변기 유형			
	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	
설											
내	편 의 시 설		세 민	변 시 설	에 (	에 어 타 (페이퍼타)	환 풍 기				
역				τ	H	대 디					
	1회 사	용료		원	,		'				
,											

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 예 산 군 수 **인**